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의안번호 : 768번
- 제출자 : 유만희 의원 외 45명
- 제출일 : 2023년 5월 30일
- 회부일 : 2023년 6월 5일

2. 제안이유

- 우리나라 2022년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OECD 가입국 중 최하위이며, 특히 서울 합계출산율은 2022년 기준 0.59명으로 전국 최저수준임. 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 이에 다자녀가족 청소년의 시립 청소년시설 사용료 면제 근거를 마련하여 저출생 극복을 위한 대안을 공공영역에서부터 실시하고, 이러한 분위기를 사회 전반으로 확산하여 조성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다자녀가족 청소년의 청소년시설 사용료 면제 근거를 규정함(안 제8조제2항제8호).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지방자치법」, 「청소년기본법」
-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비용추계서 비대상사유서 별첨)
- 다. 입법예고(2022.6.8. ~ 6.12.) 결과 : 의견 없음.

5. 검토 의견

가. 일부개정조례안의 개요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다자녀를 양육하는 가족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과 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소요되는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에게 청소년시설 사용료를 면제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부대경비(재료비, 국·내외 숙박비 등)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8조제2항제8호, 별표2).

※ 본 개정안은 정부 정책에 맞춰 다자녀 가족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경우 현행 사용료의 100분의 50을 감면하던 것을 면제(안 제8조 제2항 제8호)할 수 있도록 하고, 부대비용(재료비, 국·내외 숙박비 등)에 대해서는 부담하도록 개정(안 제8조 제1항 별표 2 제4호)하려는 것임.

※ 다자녀가족 :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는 가족(「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

※ 다둥이 행복카드 :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다자녀 가족(다만, 막내가 13세 이하)을 위한 우대용 카드(「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4호)

현 행	개 정 안
제8조(사용료 등) ① (생략) ② (생략)	제8조(사용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 ----- -----.
1. ~ 7. (생략)	1. ~ 7. (현행과 같음)

8. 「서울특별시 출산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둥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이 별표 1의 시설을 이용하는 경우 : 월 사용료의 100분의 50 감면

9. 10. (생략)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④ (생략)

[별표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비 고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	---

8. -----

면제

9. 10. (현행과 같음)

③ 사용료 감면 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재료비, 국내외 숙박비 등)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하며, 제1항-----
-----.

④ (현행과 같음)

[별표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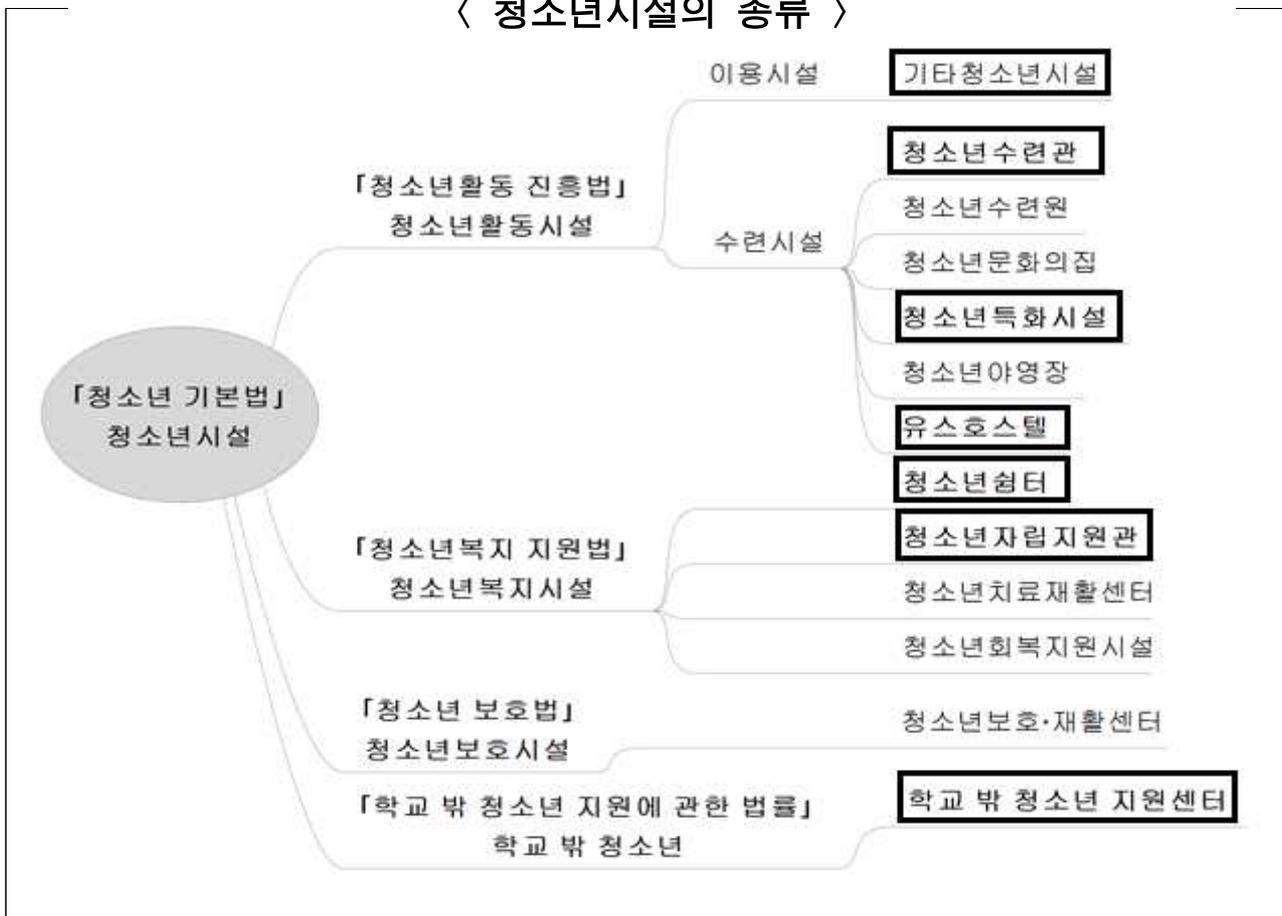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비 고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u>부대경비(재료비, 국내외 숙박비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u>
--------	--

○ 「청소년 기본법」은 청소년시설을 청소년 활동·복지·보호에 제공되는 시설로 정의하고, 총 13종의 청소년시설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할 수 있게 규정하고, 청소년단체에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이하 '본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청소년수련관(센터), 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쉼터, 자립지원관)과 「서울특별시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에 따라 운영하는 시설(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에 따라 운영하는 청소년시설은 총 61개소임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근거조례 상이), 어린이·청소년 인권교육(사무위탁), 청소년시설의 병합표기(드림센터, 이동쉼터 등) 등으로 인해 실제 설치·운영하는 청소년시설 수(61개소)와 본 조례에서 규정하는 청소년시설(51개소)의 수는 차이가 있음).

〈 청소년시설의 종류 〉



출처 : 「청소년 기본법」, 「청소년활동 진흥법」, 「청소년복지 지원법」,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사각형 : 서울특별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청소년시설

※ 「청소년 기본법」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6. “청소년시설”이란 청소년활동·청소년복지 및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을 말한다.

※ 「**청소년 기본법**」제17조(청소년시설의 종류) 청소년활동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복지에 제공되는 시설, 청소년보호에 제공되는 시설에 관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한다.

※ 「**청소년 기본법**」제18조(청소년시설의 설치·운영)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따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청소년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설치한 청소년시설을 청소년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청소년시설**(청소년센터, 특화시설, 유스호스텔, 쉼터, 아이월센터(I will center, 인터넷 중독예방상담센터), 성문화센터 등)의 운영자는 본 조례(본 조례의 [별표2], 첨부1 참조)에 따라 부과·징수 및 감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본 조례의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규정 현황 〉

(단위:천원)

조항호	감면의 대상	감면율
제8조제2항제1호	가족 중 수급권자·차상위 계층이 있는 청소년, 당사자인 청소년	면제
제8조제2항제2호	국가유공자인 청소년 또는 국가유공자의 가족인 청소년	면제
제8조제2항제3호	사회복지시설 거주 청소년	면제
제8조제2항제4호	청소년복지시설 거주 청소년	면제
제8조제2항제5호	한부모가족의 청소년	면제
제8조제2항제6호	장애인등록청소년	면제
제8조제2항제7호	13세~55세 여성 중 수영장 이용자	100분의 10 감면
제8조제2항제8호	다동이 행복카드를 소지한 청소년	100분의 50 감면
제8조제2항제9호	교육기관 또는 대안교육기관의 청소년시설 대관	100분의 50 감면

출처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제2항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를 정하여 청소년시설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장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

- 다동이 행복카드는 서울특별시에 거주하는 2자녀 이상의 자녀 이상 가족 중 막내가 13세 이하인 가정이 발급할 수 있는 카드(신용카드, 체크카드, 신분 확인용 카드(실물카드, 앱카드) 등)로, 개인에게 치중되어 있는 과중한 자녀 양육부담을 사회가 부담하기 위해 발급하고 있음.

〈 다동이 행복카드 개요 〉

- **발급대상** : 서울특별시 거주 2자녀 이상 가정(막내가 만13세 이하)
- **발급조건** : 신청당시, 부 또는 모 한 명과 자녀들이 서울특별시에 주소(주민등록으로 확인)을 두어야 하며, 서울특별시 내에서 주소(주민등록으로 확인)를 달리할 경우에도 발급 가능
- **카드종류** : 신용, 체크, 신분 확인용 카드(앱카드)
- **유효기간** : 발급대상기준(막내나이 만13세이하) 에 부합할 경우, 다동이행복카드 할인 효력이 발생함. 단, 신용 및 체크카드의 경우 카드 만료기간은 이와 별개로 신용, 체크카드사에서 제공하는 자체 혜택은 받을 수 있음.

출처 : 서울시홈페이지-분야별정보-가족-다자녀가정-다동이카드

〈 다동이 카드의 주요혜택 〉

(2023.4.30.기준)

시설/사업명	혜택내용	시설/사업명	혜택내용
서울상상나라	두 자녀 이상 무료입장	가족자연체험시설	사용료 30% 감면
한강 시민공원	수영장 50%, 눈썰매장 50%	서울시 공영주차장	주차료 할인(두 자녀 50%)
서울대공원	입장료(동물원,테마가든) 30% 할인	한강공원 내 주차장	주차장 이용료 30%할인
서울식물원	입장료 30% 할인	하수도 요금	30% 감면(세 자녀 이상)
서울시립미술관	입장료 면제(단, 특별전시 제외)	여성발전센터	이용료 20% 할인
세종문화회관	자체제작/기획공연 10~40% 할인	서울자유시민대학	학습비 30% 할인
청소년센터	두 자녀 이상 가정의 청소년 시설 이용 시 이용료 50% 할인	제대혈 비용	서울시 1년 이상 거주시, 제대혈 공급비용 감면
서울시립체육시설	개인 연습 사용료 및 생활체육교실 프로그램 수강료 50% 할인	서울시립과학관	다동이행복카드 소지자 및 카드에 등재된 가족의 관람료 면제

○ 정부(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는 2021년 다자녀 가족 지원 기준을 3자녀 이상 가족에서 2자녀 이상 가족까지 확대하여 우선적으로 교통·문화·양육·교육 지원 분야에서 우선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도 3자녀 이상 지원을 2자녀 이상 가족 지원을 위해 정책과 제도를 정비 중에 있음.

- 다자녀 가족의 지원확대는 그 동안 추진해 왔던 저출산 대책이 가시적 성과미흡에 대한 반성과 개선으로 양육책임을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려는 취지로 다자녀 가족의 삶의 질을 유지하고, 격차없는 양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추진하고 있음.

○ 다자녀 가족 지원은 저출산 문제 대응, 다자녀 부양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 완화, 사회적 평등 증진, 미래의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이유로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장기적으로 사회발전과 인구구조의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다자녀 가족 지원확대는 의미가 있다고 사료됨.

※ 평생교육국이 재정적인 이유로 청소년시설 중 일부에서만 사용료의 감면을 추진하는 것으로 보이나 조례의 개정 효과 뿐만 아니라 저출산이 우리나라 미래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볼 때, 장래에는 모든 청소년시설에서 다자녀 지원정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전면 감면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다자녀 가족 지원의 필요성

· **저출산 대책** : 우리나라는 현재 저출산과 인구 고령화가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으며, 다자녀 가족 지원은 다자녀를 가진 가구에 경제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다자녀를 키우는 가족들의 부담을 줄이고, 나아가 출산을 장려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출산율 증가를 통한 인구 구조를 안정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경제적 부담 완화** : 다자녀 가구는 자녀들의 교육, 의료, 생활비 등으로 많은 비용이 필요하며, 다자녀 가족에 대한 지원은 이러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사회적 평등 증진** : 다자녀 가족은 과도한 양육비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경제적 문제로 인해 자녀들의 교육과 사회참여 등에서 부득이한

제한을 경험할 수 있는바, 다자녀 가족 지원은 교육기회 및 사회참여 등의 격차를 해소하고, 다자녀 가족의 자녀들에게 또래들과 같은 동등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짐.

- **미래 경쟁력 강화** : 인구 저출산으로 인해 노동 인구가 감소하는 상황에서 다자녀 가족을 지원하는 것은 출산을 장려할 수 있으며, 출산율 감소의 둔화 및 출산율의 증가는 장래에 노동인구 확보와 함께 다양한 인재를 육성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며, 노동인구와 인재확보는 경제활성화와 사회발전을 촉진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감면부담 주체의 문제, 비용추계의 적정성, 감면에 따른 손실보전 여부와 재정여건 등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요망됨.

나. 조문별 검토

1)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 전액 감면

- 안 제8조 제2항 제8호는 2자녀 이상 가족의 청소년이 청소년시설을 이용시 100분의 50을 감면 하던 것을 전액 면제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효과성 확보를 위한 체계(규정, 서비스전달 체계, 협약 등) 구축, 정책추진에 필요한 자원 등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첫째, 사용료는 본 조례에서 감면을 규정한 조항은 강제규정(감면한다)이 아닌 임의규정(감면할 수 있다)이며, 본 조례에 따른 사용료 감면의 주체는 서울특별시가 아닌 청소년시설의 운영자로,
 - 본 개정안을 통해 감면범위를 재규정하더라도 청소년시설의 운영자들에게 감면을 강요할 수 없으며, 청소년시설 운영자의 결정에 따라 청소년들의 이용료 감면여부가 결정될 것으로 보이는데, 조례 개정의 효과성을 확보할 수 있는 대안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8조(사용료 등) ① 운영자는 별표 2에서 정한 범위 안에서 사용료, 강습료 및 이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서울특별시(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용료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서울시보에 고시한다.

② 운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 둘째, 현행 조례가 모든 청소년시설에서 감면을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청소년시설 중 청소년센터에서만 사용료를 감면하고 있고,
 - 평생교육국이 제출한 본 개정안과 관련한 비용 추계도 모든 청소년시설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닌 청소년센터로 한정하여 산출(2023년 청소년센터에서 사용한 다등이 카드를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바,
 - 평생교육국이 조례의 개정 취지와는 다르게, 감면대상을 전체 청소년시설이 아닌 청소년센터로 한정하여 사용료 면제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본 개정안 관련 평생교육국의 비용추계 〉

(1) 다등이카드 할인비율 확대 등에 따른 23년 대비 24년 예산 증감액(예상액) : 38억

* 24년 다등이카드 사용료 면제 관련 예산(예상액)
 = 23년 1분기 다등이카드 사용료 면제 금액 * 4(4분기) * 2(50%→100% 감면) * 149% * 1.1
 = 436,785,020원 * 4 * 2 * 149% * 1.1 = 5,727,125,182

* 23년 다등이카드 사용료 면제 관련 예산(예상액)
 = 23년 1분기 다등이카드 사용료 면제 금액 * 4(4분기) * 149%
 = [436,785,020 * 3(3분기)] + [436,785,020원 * 1(1분기) * 149%]
 = 1,961,164,740

* 다등이카드 할인비율 확대에 따른 23년 대비 24년 예산 증감액(예상액)
 = 5,727,125,182(24년 예상액) - 1,961,164,740(23년 예상액) =
3,765,960,442

출처 : 평생교육국

〈 서울특별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비용추계 내역 〉

3. 비용추계의 결과

○ 총 비용 ≙ 28,635,630천원 (연평균 5,727,126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24)	2차년도 (2025)	3차년도 (2026)	4차년도 (2027)	5차년도 (2028)	합계
세입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 청소년 청소년시설 사용료 면제 (제8 조제2항제8호)		△5,727,126	△5,727,126	△5,727,126	△5,727,126	△5,727,126	△28,635,630
	소계(a)		△5,727,126	△5,727,126	△5,727,126	△5,727,126	△5,727,126	△28,635,630
세출	-		-	-	-	-	-	-
	소계(b)		-	-	-	-	-	-
□총 비용(b-a)			5,727,126	5,727,126	5,727,126	5,727,126	5,727,126	28,635,630

출처 : 서울특별시의회 재정분석담당관 비용추계서(의안번호 0768관련) 발췌

- 서울특별시는 언론 보도(2023.5.17.)를 통해 청소년시설의 ‘전면 무료이용’을 발표했으나, 평생교육국이 현행과 같이 청소년센터에서만 감면을 추진할 경우 서울특별시의 정책 신뢰성은 낮아질 수 있으며,
 - 정부의 다자녀 지원정책의 효과(양육부담에 대한 국가 및 사회의 부담)를 저감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바, 현행 조례와 불일치하는 감면범위를 본 개정안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명확히 해야할 필요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청소년시설 전면 무료 관련 서울특별시 보도자료 〉

- 전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공공시설은 총 7개로, 서울대공원, 서울식물원, 서울시립과학관, 서울 상상나라, 시립체육시설(서울월드컵경기장, 장충체육관 등) 입장료, 여성발전센터, 시립청소년시설 강습료 등이다.

출처 : 서울특별시 언론보도(2023.5.17., 서울시, 저출생 대책 3탄...오세훈 시장 43만 '다자녀 가족' 챙긴다) 발췌

○ 셋째, 청소년시설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 중 청소년센터의 위수탁협약서에만 사용료 감면손실 보전에 대한 내용이 있으며, 서울특별시에 부과된 의무의 내용은 감면손실의 전액 보전이 아닌 '사용료 감면액을 보전하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 다른 종류의 청소년시설(청소년 활동·보호·이용 시설 등)에서는 사용료 감면과 감면손실에 대한 보전에 대한 내용이 협약서에 누락되어, 대부분의 청소년 시설 운영자들은 감면할 책임이나 의무가 없으며, 서울특별시도 감면으로 인한 청소년시설의 손실에 대해 보전의무조차 없는 상황임.

○ 위와 같은 여건(① 이용료 면제자→시설운영자, ② 이용료 면제의무 없음, ③ 감면손실에 대한 보전의무 없음 등)을 고려해 볼 때 양육부담 완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체계나 기반이 갖춰졌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 그 동안 집행기관에서 소극적, 부분적으로 추진했던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감면을 적극적, 전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제도 보완과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재정적 상황과 제도적·환경적 여건에 대해 종합적이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사용료 감면은 공공시설의 수익감소로 이어지며, 시설 운영·유지를 위한 재원충당의 어려움이 증가할 수 있고, 필요재원 확보를 위해 현존하는 예산의 분배·관리 문제(예산과와의 협의)뿐만 아니라 감면손실을 상쇄하기 위한 재원조달 방안 등 정책을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도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사용료 감면과 감면손실 보전에 관련한 위수탁 협약의 내용 〉

제15조(수입금의 징수·처리) ① "■■■■"는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 서울특별시 청소년 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회원모집 및 사용료 등을 징수(감면)할 수 있다.

② "■■■■"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료 등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 징수대상·징수방법·징수금액 산정기준 등에 대하여 "시"와 사전에 협의하고 이에 대하여 "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는 관련 법령 및 규정에 의한 사용료 감면 규정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시"는 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사용료 감면액을 보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는 각종 사업 및 수익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익에 반하지 않아야 하며, 청소년 이용률을 제고하고 특성화사업 활성화에 노력하여야 한다.

⑤ "■■■■"는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입금에 대하여 운영비 및 여타 사업비 등 다른 수탁재산과 구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별도의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관리하도록 하며, 그 수입·집행계획을 제7조에 정한 사업계획서와 함께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산내역서는 제15조 1항 내지 3항과 같은 절차를 거쳐 "시"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⑥ "■■■■"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한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시"의 승인을 받아 해당 센터 운영 및 시설관리에 사용한다.

출처 : 평생교육국 (민간위탁 위수탁협약서, 일부발췌, 특정 수탁단체명 감춤처리)

- 넷째, 서울특별시는 청소년시설의 전체 운영비 중 23.8%만 민간위탁금으로 교부하고 있고, 나머지(76.2%)는 청소년시설의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 청소년시설의 사용료 면제는 청소년시설의 운영비 감소 또는 적자운영으로 이어질 수 있는바, 청소년시설의 운영자가 서울특별시의 감면손실 보전 없이 다자녀 가족 청소년의 사용료 감면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상황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 센터별 총운영비 대비 민간위탁금(위탁운영비) 비율 〉

(단위:%)

구분/센터명	평균	2017	2018	2019	2020	2021	2022
청소년센터 평균	23.8	18.1	19.8	20.7	28.3	33.1	23.1
자립형	18.8	13.6	14.3	14.7	21.2	30.6	18.4
강북청소년센터	17.3	12.6	13.1	11.8	21.8	26.5	17.8
구로청소년센터	25.2	23.6	16.8	20.4	27.5	42.4	20.4
금천청소년센터	27.4	16	20	20	32	46	30.5
노원청소년센터	12.1	8	8	8.7	8.6	25.6	13.5
동대문청소년센터	32.8	24.7	29.7	27	37.7	51.3	26.2
마포청소년센터	13.4	7.7	7.8	8.2	16.3	24	16.1
망우청소년센터	17.0	14	15	16	18	24	14.7
목동청소년센터	13.6	10.6	11.7	9.4	13.6	23.7	12.7
문래청소년센터	12.4	7.9	9.1	9.7	11.7	22	13.8
서대문청소년센터	19.7	12	12	13	27	34.4	20
성동청소년센터	17.5	14	13	14	21	28.2	14.6
성북청소년센터	23.0	20.4	19.7	22.5	25.8	29.6	20.1
수서청소년센터	13.9	7.4	7.6	7.6	14.5	25.9	20.1
은평청소년센터	18.0	11.7	16.4	17.7	20.8	25	16.4
지원형	36.9	27.2	30.8	32.6	42.6	45.8	42.7
강동청소년센터	43.0	31	40	38	51	48.9	49.3
광진청소년센터	25.4	16	18	23	32	33	30.2
보라매청소년센터	30.9	25	27	27	33	37.4	35.8
서울청소년센터	34.2	27.2	26.7	28.2	34.9	49.3	39
중랑청소년센터	39.2	26	26	31	53	51.9	47.5
창동청소년센터	37.4	23	37	37	39	43.8	44.8
화곡청소년센터	48.4	42	41	44	55	56.1	52.5

※ '20~'21년의 경우, 코로나로 연내 사업 축소로(예산변경) 보조율 높아짐(결산 기준 작성)

출처 : 평생교육국(2022년 행정사무감사 제출자료 497p)

- 본 개정안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청소년시설의 적자운영을 방지하기 위한 청소년시설의 감면손실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보전에 대한 의무가 부과되어야 하나, 현행 조례에는 관련 규정이 없어, 이에 평생교육국은 ‘예산의 범위 안’으로 한정하여 보전하고 있으며,
 -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청소년시설의 이용률 감소에 따라 감면손실액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전되었으나, 본 개정안과 같이 모든 청소년시설에서 감면을 추진할 경우 비용은 크게 증가할 것으로 보여,
 - 평생교육국이 감면손실분 전액을 보전할 의지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고 보이며, 본 개정안의 효과성을 담보하기 위해 감면 손실 보전분에 대한 시 재정여건을 함께 살펴보아야 할 것임.

〈 최근 5년간 청소년시설 사용료 감면손실 보전 현황 〉

(단위:천원)

연도	청소년센터 감면손실 금액					보전 지원금	미보전액	보전율
	계	저소득	여성	다둥이	시설대관			
2022	1,432,858	333,920	141,546	950,860	6,533	1,432,858	-	100%
2021	302,780	188,746	33,935	77,371	2,728	302,780	-	100%
2020	455,559	237,824	104,154	96,287	17,293	399,525	44,214	87.7%
2019	1,119,093	578,881	298,351	221,195	20,665	1,032,234	86,859	92%
2018	1,046,454	553,866	259,756	206,140	26,691	897,208	149,246	85%

- 감면손실 보전에 대해 서울특별시의 의무를 규정하지 않거나,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감면손실의 일부 보전이 지속될 경우, 청소년시설의 운영자들은 이익이 아닌 생존을 위해 청소년시설의 운영을 포기하여 공공서비스 공급의 차질 또는 중단 등도 예상되는바, 본 개정안을 추진하기 위한 감면손실을 보전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마련이 필수적 요소라고 사료됨.

- 다섯째, 인터넷중독예방상담센터의 각종 검사비용 또는 상담비용, 청소년 성문화센터에서 제공하는 출장 성교육 등도 ‘시립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으로, 본 개정안에서 규정하는 면제의 대상이나, 평생교육국의 비용추계에서 제외됐으며, 실제 청소년시설인 아이월센터 또는 성문화센터의 운영자들이 자진하여 사용료를 면제할 가능성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청소년시설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안교육기관 뿐만 아니라 방과후아카데미, 유아스포츠단 등도 본 개정안에 따라 2자녀 이상 가족의 청소년이 이용할 경우 감면의 대상임에도 불구하고, 평생교육국은 예산추계에 반영하지 않고 있고, 이를 청소년시설의 운영자들에게 강제할 수도 없는바,
 - 다자녀 가족은 정부와 서울특별시 정책과는 달리 대부분의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에서 양육부담 경감 정책에서 제외될 수 있어, 정책의 효과성과 시민의 정책 신뢰성을 저감시킬 여지는 없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 평생교육국이 본 개정안과 관련하여 정부 정책과 본 개정안의 취지에 대해 충분한 이해가 결여된 상태에서 비용을 추계한 것으로 보이는데, 모든 청소년시설에서 제공하는 모든 프로그램 또는 서비스에 대해 감면대상 여부를 판단한 비용추계를 기반으로 본 개정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하겠음.
- ※ 청소년시설의 운영자는 시설운영비를 충당하기 위해 다양한 공모사업과 수익사업을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명목상 공모사업과 수익사업도 청소년시설의 목적사업에 해당하는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바, 이를 목적사업으로 판단하여 감면손실을 보전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 여섯째, 현행 청소년센터는 2자녀 가족의 청소년이 청소년시설을 이용할 때, 1개 프로그램만 50%를 감면하는 센터도 있고, 다수 프로그램을 모두 감면하는 센터도 있는 등 청소년시설 운영자의 판단에 따라 ‘선택적 감면’을 적용하고 있는바,

- 감면범위를 통일하여 추진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으며, 감면의 주체인 청소년시설의 운영자가 양육부담 완화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다양한 대책 마련도 모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일곱째, 청소년 개인이 다등이 행복카드를 소지하고 프로그램을 이용할 경우 본 개정안에 따라 사용료가 면제되나, 다등이 카드를 소지 및 미소지 청소년들이 혼재한 ‘단체’의 경우(학교와 청소년센터 연계프로그램 또는 성문화센터의 성교육) 면제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하여 본 개정안의 의결·공포 후 사용료 감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청소년시설이 주체하는 프로그램일 경우 청소년시설의 내부외부를 구분하지 않고, 청소년 이용률로 산정하고 있는바, 청소년시설 내·외부 프로그램의 구분에 대한 혼란은 적을 것으로 사료되나, 청소년시설의 공모사업 또는 수익사업, 개인 대상이 아닌 단체를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있을 수 있어, 정책의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해 청소년시설 운영자들의 의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시설의 사용 등) ① 청소년시설을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9세 이상 24세 이하인 청소년 또는 청소년 관련 단체
2. 제1호 이외의 청소년시설의 사용을 희망하는 개인 또는 단체

○ 여덟째, 「행정기본법」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료와 사용료를 구분하지 않고 사용하고, 「지방자치법」은 두 개념을 혼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나,

- 행정재산을 규율하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행정안전부는 이용료와 사용료를 명확히 구분하고 있어, 본 조례(사용료, 이용료, 강습료, 대관료 등)와 본 개정안에서 용어를 명확히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하겠음.

※ **사용료**

- 공공기관이 행정재산의 사용을 허가(사용수익 허가)하고 사용하는 자에게 징수하는 금액
- 사용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에 따라, 대통령령의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용료를 매년 징수함.
예시) 행정재산의 토지사용료 등, 서울시가 시유지 점유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하는 것

※ **이용료**

- 공공기관이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탁하고,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이를 이용한 시민에게 받는 비용(입장료, 관람료 등)
-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

※ **행정안전부의 사용료와 이용료 정의(「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별표4)**

- 사용료 : 수익재산에 대하여 법 제20조 및 영 제14조에 따른 사용요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징수하는 금액
- 이용료 : 수탁기관이 재산을 이용하는 자에게 조례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징수하는 금액 (수영장 입장료, 문화회관 관람료 등)

※ 「행정기본법」제35조(수수료 및 사용료) ① 행정청은 특정인을 위한 행정서비스를 제공받는 자에게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② 행정청은 공공시설 및 재산 등의 이용 또는 사용에 대하여 사전에 공개된 금액이나 기준에 따라 사용료를 받을 수 있다.

※ 「지방자치법」제153조(사용료)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2조(사용료)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을 사용허가한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율(料率)과 계산방법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징수한다. 다만, 연간 사용료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경우에는 사용허가 기간의 사용료를 일시에 통합 징수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21조(수탁재산의 위탁료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27조제3항에 따라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과 지출을 기준으로 하여 계산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정한다.

1. 수입

가. 위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입장료 등 이용료

④ 법 제27조제4항 또는 제5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 또는 전대받은 자로부터 받는 사용료는 제14조에 따른 사용료율과 평가방법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법 제27조제6항에 따른 이용료는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결정한다.

○ 본 조례에서 혼용하고 있는 ‘사용료’는 서울특별시가 행정재산을 사용하고 있는 자에게 부과·징수하는 비용이며, 이용료는 행정재산을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청소년이나 시민에게 입장료나 관람료 등의 비용으로,

- 본 개정안에서 면제하고자 하는 것이 청소년시설은 사용료가 아닌 ‘이용료’로 사료되는바, 본 조례 및 본 개정안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따라 용어를 개선 또는 수정하거나, 필요에 따라 용어의 정의를 신설할 필요는 없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그 외, 저출산 대응정책과 관련하여 양육부담 완화를 위한 이용료 감면 정책은 사회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나, 개인이 실제 필요로 하는 지원인지, 필요로 하는 지원이 누락되고 있는지 등을 확인하는 체계적 평가체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본 개정안은 정책의 근거를 형성하는 단계로, 청소년시설 이용료 감면의 목적은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 완화로 정책의 목적은 명확하나, 목표 또는 목표달성 여부를 평가할 수 있는지 세부지표 마련 등 최소한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평가체제나 환류제도는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이는바, 정책의 평가 및 제도개선을 위한 준비도 필요하다고 하겠음.

2) 부대경비 이용자 부담 규정

- 안 제8조제3항 및 별표2제4호에서는 사용료 감면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재료비, 숙박비 등 부대경비는 이용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려는 것으로, 청소년시설의 프로그램에 따라 다양한 숙박 비용이 존재하고 있는바, 모든 숙박비의 범위에 모호한 부분은 없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임.

현 행	개 정 안
③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자는 납부한 사용료를	③ <u>사용료 감면 시 프로그램 운영에 소요되는 부대경비(재료비, 국내외 숙박비 등)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하며, 제1항에 따라 사용자가 사용료를 납부하고 사용</u>

반환할 수 있다.

[별표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비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고	

자의 책임이 없는 사유로 인하여 청소년시설 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운영자는 납부한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별표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비	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부대경비(재료비, 국내외 숙박비 등)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
고	

- 청소년센터에서 추진하는 캠프 및 캠핑의 경우 숙박비는 부대경비로 볼 수 있으나, 유스호스텔의 주요 사업은 숙박 또는 객실 공급으로, 유스호스텔의 숙박비는 부대경비로 분류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하겠음.
- 청소년문화교류센터(미지센터)에서 추진하는 국내 및 국외 사업(미지희망원정단, 해외창의도시탐방, 동아시아청소년교류사업 등)은 다자녀 여부를 적용하지 않고 모든 참가자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나,
 - 본 개정안에 따를 경우 숙박비는 면제의 대상인 다자녀 가족의 청소년도 부담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바, 안 제8조제3항 및 별표2제4호의 개정은 청소년시설의 사업적용에 있어, 양육부담의 경감을 위해 발의된 본 개정안의 취지와도 부합하지 않는바,
 - 본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하고, 시민들의 착오 또는 오인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명확한 기준 마련을 위한 조문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결론적으로 인구감소, 출산을 저하 등의 대응의 일환으로 다자녀 가족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시설의 이용료를 면제를 규정하는 등 다자녀 가족의 양육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이 실행되어야 하나,
 - 일부 청소년시설에서 소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감면정책을 모든 청소년 시설을 대상으로 적극적으로 전환하기 위해 제도, 규정, 협약서, 용어 등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 이용료 면제 시설과 프로그램의 기준 수립, 청소년시설의 운영자들이 양육 부담 완화 정책에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감면손실 보전을 위한 평생교육국의 개선이 우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제도·규제, 재원 마련 방안 등에 대해서 종합적이며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전 문 위 원	김 정 덕	입 법 조 사 관	정 찬 일
---------	-------	-----------	-------

첨부1. [별표 2]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서울특별시 청소년시설 사용료 및 강습료 상한

1. 시설사용료(강습 없이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한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단위 : 원)

구분	사용료 대상	1회(1시간) 사용료	월 사용료(1회 1시간 기준)						비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관	대학생, 성인	2,500	8,800	17,600	26,400	35,200	44,000	52,800		
	초·중·고생	1,800	6,400	12,800	19,200	25,600	32,000	38,400		
	어린이	1,300	5,200	10,400	15,600	20,800	26,000	31,200		
수영장	대학생, 성인	4,300	17,500	35,000	52,500	70,000	87,500	105,000		
	초·중·고생	2,500	10,000	20,000	30,000	40,000	50,000	60,000		
	어린이	1,800	7,500	15,000	22,500	30,000	37,500	45,000		
헬스장	대학생, 성인	3,000	12,500	25,000	37,500	50,000	62,500	75,000		
	고등이하	2,000	8,500	17,000	25,500	34,000	42,500	51,000		
시설 대관	강당, 공연장 등	200석 이내	2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25,000원						
		300석 이내	3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0,000원						
		400석 이내	450,000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35,000원						
	공연연습실 프로그램실	유사시설 준용	기본 3시간, 초과 시 시간당 10,000원							
	부대시설	유사시설 준용	탁구장, 골프장, 풋살장, 스쿼시장, 사물함, 식당 등							
비고	1. 체육관 : 체육관을 자유이용 하는 경우로 시설규모, 이용자수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시설대관 : 강당, 극장, 공연장 등을 전용(專用)하는 경우 또는 일부 시설에 설치되어 있는 부대시설의 강습 및 이용의 경우임 3.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 4. 사용료 할증 1) 토, 일, 공휴일(유스호스텔의 경우 금, 토, 공휴일의 전날)은 기본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시설대관의 경우, 기본 3시간을 초과하여 사용 시 1시간미만은 1시간으로 계산한다. 5. 사용료 할인(월 사용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6.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프로그램 영역별 강습료

※ 실제 청소년시설에서 징수하는 요금은 조례상한요금의 범위 내에서 개별 시설마다 다름

(단위 : 원)

구 분	대 상	월 강습료 상한(1시간 기준)						비 고
		주1회	주2회	주3회	주4회	주5회	주6회	
체육시설 이용수업	대학생, 성인	31,000	43,000	56,000	68,000	81,000	93,000	
	초·중·고생, 어린이	25,000	37,000	50,000	62,000	72,000	80,000	
외국어	대학생, 성인	39,000	56,000	73,000	92,000	108,000	120,000	
	초·중·고생, 어린이	33,000	45,000	56,000	67,000	78,000	90,000	
예체능	대학생, 성인	39,000	61,000	77,000	91,000	106,000	118,000	
	초·중·고생, 어린이	35,000	55,000	70,000	82,500	96,500	107,000	
	그룹활동 (유아반 등)	내용, 강사수준 등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 유사시설 준용						
취미·교양 문화 등	대학생, 성인	28,000	39,000	50,000	64,000	75,000	84,000	
	초·중·고생, 어린이	22,000	33,000	45,000	56,000	65,000	72,000	
상담	각종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	검사 소요시간, 횟수, 수준에 따라 징수						
청소년 사업	대학생 이하 (가족 포함)	유사프로그램 수준을 고려하여 징수 (캠프, 동아리활동, 학교연계, 개별강습 및 캠프 등)						
비 고	<p>1. 프로그램 영역 구분</p> <p>1) 체육시설이용 : 수영, 헬스, 당구, 골프연습장 등 체육시설로 분류하여 성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되는 영역</p> <p>2) 외국어 : 영어, 일본어 등의 외국어 영역</p> <p>3) 예체능 : 음악(보컬, 악기 등), 미술(회화, 만들기 등), 체육, 무도 등의 영역</p> <p>4) 기타 취미·문화 : 외국어, 예체능, 체육시설이용프로그램을 제외한 범위의 영역</p> <p>5) 상담 : 개인·집단 상담영역, 심리검사, 교육, 놀이치료 등의 영역</p> <p>6) 청소년목적사업 : 동아리활동, 학교연계활동, 진로체험교육, 각종 국내외 캠프, 공연행사, 특강 등</p> <p>2.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p> <p>3. 강습료 할인 ※ 상담사업, 청소년목적사업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음 : 시설 운영자가 프로그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p> <p>1) 단일 프로그램으로 1회 이용시간이 2시간 이상인 경우에는 주 1-2회는 20%, 주 3-4회는 30%, 주 5-6회는 40% 할인</p> <p>2) 1일, 2가지 이상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3) 각각 다른 프로그램을 주 3회 이상 이용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프로그램별 강습료를 합한 금액의 30% 할인</p> <p>4. 프로그램 운영 시 소요되는 각종 교육재료비의 경우에는 이용자가 별도로 부담한다.</p> <p>5. 그 밖에 요금을 정하지 아니한 사용료를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인근 공공유사시설(구민회관, 구민체육센터, 복지관 등) 2개소 이상의 사용료를 산술평균한 금액을 준용하는 방법 등으로 적정요금을 산정하여 시장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p>							

3. 유스호스텔 객실 및 회의실 이용료

1) 객실 이용료

(단위 : 원)

구분	적용기준	청소년		성인		비 고
		회원	비회원	회원	비회원	
1인실	침대(1 bed)	50,000	52,000	52,000	54,000	
	객실(1 room)	50,000	52,000	52,000	54,000	
2인실	침대	35,000	37,000	37,000	39,000	
	객실	70,000	74,000	74,000	78,000	
3인실	침대	25,000	27,000	27,000	29,000	
	객실	75,000	81,000	81,000	87,000	
4인실	침대	20,000	22,000	22,000	24,000	
	객실	80,000	88,000	88,000	96,000	
6인실	침대	18,000	20,000	20,000	22,000	
	객실	108,000	120,000	120,000	132,000	
10인실	침대	16,000	18,000	18,000	20,000	
	객실	160,000	180,000	180,000	200,000	
가족실	큰도형	135,000	135,000	135,000	135,000	

※ 객실 인원 추가 시 1인당 10,000원 씩 별도 요금 부과

2) 회의실 이용료

(단위 : 원 / 1일 기준)

구분	수용인원	이 용 료		비 고
		9시간	4시간	
강당	120명	900,000	500,000	
대회의실	80명	800,000	400,000	
중회의실	60명	600,000	300,000	
소회의실	40명	400,000	200,000	
분임회의실	20명	200,000	100,000	
비 고	1. 이용료 할증 : 금, 토, 공휴일 전날은 이용요금의 30% 범위 내에서 할증할 수 있다. 2. 이용료 할인 : 시설 운영자가 장비, 식사 이용과 중복하여 이용하는 경우, 시설 등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0% 범위 내에서 할인할 수 있다.			

※ 이 조례에 명시된 금액은 부가가치세 미포함 금액임